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정재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2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의자 : 정재환, 문기호, 안영호  
문희성, 박경흠

### 1. 제정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60 (제275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6. 19. ~ 6. 26.(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전동 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

회사에 납부한다.

④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누리집 등을 통해 보험 가입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금 청구)** ①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 규정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소 속: 노인장애인과
- 직 급: 지방사회복지주사
- 성 명: 김위란
- 연락처: 052-290-3631